

- 2026년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공모안내서

■ 유의사항

1. 공모기간은 2026. 2. 27(금). ~ 3. 31.(화) 18:00 까지입니다.
※ 신청·접수는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3.6.(금)부터 가능
2.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자 집중으로 인해 접수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마감 3~4일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3. 수요기업의 거짓·부정한 방법을 통한 사업 참여 및 공급기업과 모의하여 정부지원금을 편취하는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 정부지원사업과 동일·유사한 과제로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접수를 포함한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모든 프로세스는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며, 문의 사항은 아래 고객센터 또는 사업관리시스템 1:1문의하기 게시판을 이용 바랍니다.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고객센터 ☎1833-2246(운영시간 평일 9:00~18:00)

202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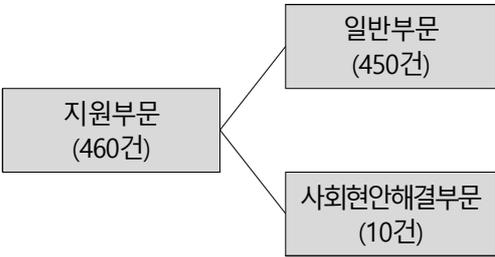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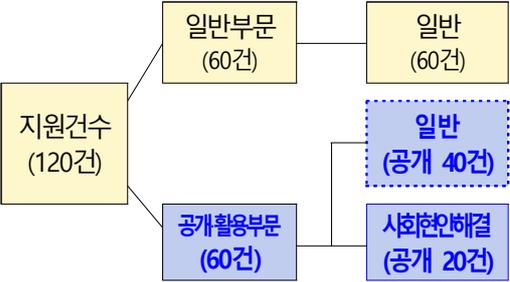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dat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수요기업 모집 주요 변경사항

□ '25년 대비 추가 및 변경되는 사항을 공지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존('25년)	변경('26년)
1. 지원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 '데이터바우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 '데이터바우처' 지원 : 일반 및 공개·활용 조건부로 구분 지원
2. 지원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460건  <pre> graph LR A[지원부문 460건] --> B[일반부문 450건] A --> C[사회현안해결부문 10건] </p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20건 - 일반 60건 / 공개·활용 60건  <pre> graph LR D[지원건수 120건] --> E[일반부문 60건] D --> F[공개활용부문 60건] E --> G[일반 60건] F --> H[일반 공개 40건] F --> I[사회현안해결 공개 20건] </pre>
3.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당 최대 4,500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기업당 최대 4,500만원 지원 (공개·활용) 기업당 최대 7,500만원 지원
4. 과제협의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된 수요기업에 한하여 공급기업과 과제협의를 후 매칭심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기간 내 공급기업과 사전 협의하여 (견적서와 과제협의를서 도출) 신청·접수 시 제출
5. 사회현안 해결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및 병원 지원 가능 인구소멸, 기후변화, 질병, 재해안전사고 등 4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기업 및 예비창업자도 지원 가능 사회현안해결 10대 분야 43개 영역(붙임1) ※ 데이터 산출물의 공개·활용 필수
6. 선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격성심사→발표평가(전체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격성심사→서면평가→발표평가 (발표평가: 선정기업의 2배수)

※ '26년부터는 신청 전에 공급기업과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견적서와 과제협의를서를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평가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목 차

I.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1
1. 추진 배경	1
2. 사업 내용	1
3. 추진 체계	2
4. 추진 절차	3
II. 공모 안내	5
1. 지원 내용	5
2. 지원 범위 및 대상	6
3. 지원 시 유의사항	8
4. 민간부담금 및 사업비 구성	12
5. 제출 서류	14
6. 지원사업 점검 및 결과 보고	16
III. 선정 방안	17
1. 평가체계 및 절차	17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18
IV. 신청 방법	20
1. 신청·접수 안내	20
2. 문의처 및 관련 홈페이지	20
V. 기타(필독사항)	21
1. 신청조건 및 일반사항	21
2. 평가제외	22
3. 사업관리 및 점검	23
4. 부정행위 제재	24
5. 개인정보 보호	25
붙임1. 사회문제 10대 분야 43개 영역	28
붙임2. 공개·활용 협약서	29

I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1. 추진 배경

- 데이터·AI 기반 비즈니스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산업 성장을 견인하며,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한 데이터 활용 지원으로 DX·AX 전환을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사업 내용

- (사업명) 2026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 (사업개요) 중소·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 데이터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획·설계에서 상품 구매, 수집·생성, 가공, 분석 등에 이르는 데이터 활용 전 단계에 대해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
- (사업기간) 2026년 6월 1일 ~ 2026년 11월 30일
- (지원규모) 총 72억원, 120건 지원(일반부문 60건, 공개·활용부문 60건)
- (지원금액) 일반부문 기업당 최대 4,500만원 지원,
공개·활용부문 기업당 최대 7,500만원 지원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부문별 지원 구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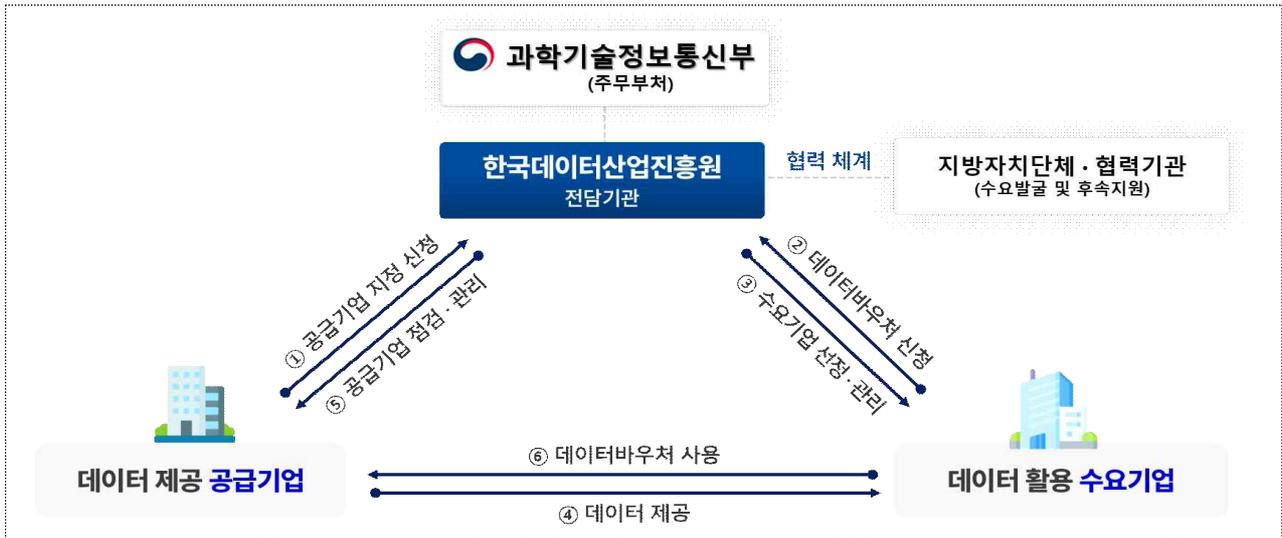
구분	일반부문(60건 지원)	공개·활용부문(60건 지원)
내용	기업의 특성·상황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획에서부터 설계·가공·분석 등 수요기업 맞춤형 데이터 지원 ※수요기업의 데이터 수요에 맞게 공급기업이 데이터 상품, 가공 등 활용 서비스 제공	데이터바우처로 수집·생성·구축된 데이터를 공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는 조건으로 데이터 지원 ※원천데이터가 수요기업의 소유로 공개의사가 없거나 개인정보 등으로 공개가 어려운 경우 일반부문에 지원 가능(단 수요기업이 동의하면 공개·활용 지원이 가능하나 개인정보 이슈가 있는 데이터는 제외)
		사회현안해결 지원(20건) ▶ (분야) 사회문제 10대 분야 43개 영역 해당 과제 (붙임1 참조) ▶ (대상) 일반 지원대상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및 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 등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초기 중견기업 포함),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	

※ 지원 방법 등 상세 내용은 공모 안내, 선정 방안, 신청 방법, 기타 공모 내용 확인

3. 추진 체계

- 데이터 상품 및 활용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기업을 모집하고, 데이터 바우처 활용 수요기업을 선정하여 데이터 상품 및 활용서비스를 지원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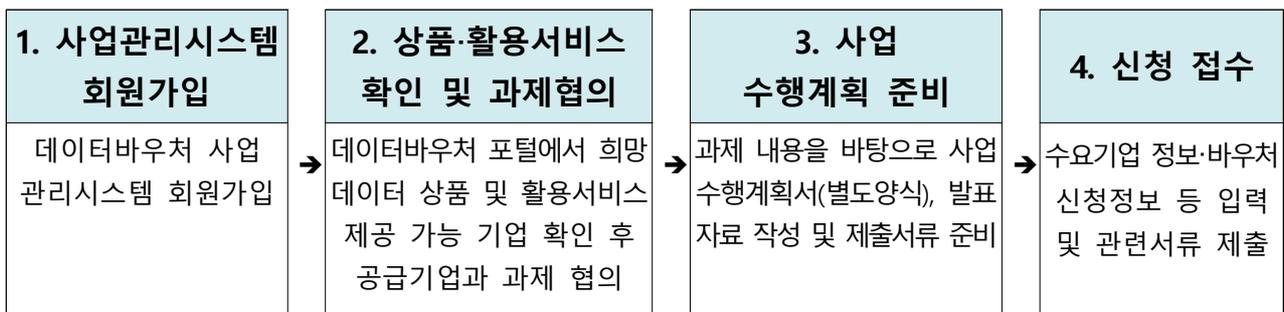
< 주체별 주요 역할 >

구 분	주요 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이행·관리 및 사업 주관 ·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협력체계 구축·운영 · 공급기업 모집·등록·관리 · 데이터 활용 수요기업 공모·선정 및 지원 · 우수성과사례 창출·확산
협력기관 (산업분야별 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분야별 사전심사, 전문분야 평가위원 풀 공유 · 수요기업 분야 전문성 검토 · 수요기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공동 수요 발굴, 사업설명회 협력 · 지역별 수요기업 성과확산 협력
수요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상품 및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지원받아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데이터 활용기업
공급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기업이 원하는 데이터 상품 및 데이터 활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등록된 데이터 제공기업

4. 추진 절차

- ①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접수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포털(<https://kdata.or.kr/datavoucher>)에서 필요한 데이터 상품 및 활용서비스를 확인, 공급기업과 협의하여 공모 안내에 따라 사업관리시스템(<https://kdata.or.kr/pms>)을 통해 접수
 - ☞ **(기업회원)** 중소·소상공인(초기 중견기업 포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 및 연구기관, 병원
 - ☞ **(개인회원)** 예비창업자, 대학연구팀(대표 교수 개인명의 인증서를 통해 가입)
- ② 수요기업 공모안내서 절차에 따라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며, 공급기업이 서명한 과제협약서와 견적서 및 증빙서류(사업수행계획서, 발표자료, 공개·활용 부문 지원 시 '공개활용 협약서')를 제출하여 최종 접수 완료

<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 절차 >



- ③ 수요기업 기본 요건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 진행
- ④ 선정된 수요기업, 공급기업, 전담기관 간 다자간 전자협약 체결
- ⑤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에 데이터 상품 또는 활용서비스 제공
- ⑥ 수요기업은 공급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 상품 및 활용서비스를 통해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 및 新서비스제품 창출 등 사업 수행
- ⑦ 전담기관은 수요기업의 원활한 사업수행 확인을 위해 이행점검과 공급기업의 감리를 통해 데이터 이관·개인정보·품질 점검 등 시행

- ⑧ 전담기관은 사업 성과확산을 위해 우수한 데이터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사례집 발간 및 홍보, 우수사례 확산, 시상 등을 통해 후속 지원 예정
- ※ 협약 후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본 사업의 각 단계별 세부 절차 안내 공지

<세부 추진 절차 및 일정>

구분	추진내용
1. 공모·접수 '26.2~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확인) K-DATA 홈페이지, 데이터바우처 포털, 사업관리시스템 등 ▶ (상품 및 활용서비스 확인) 데이터바우처 포털(https://kdata.or.kr/datavoucher) ▶ (과제협약) 수요기업은 포털에서 희망하는 데이터 상품 및 활용서비스를 검색하여 해당 공급기업과 과제협약 후 과제협약서와 견적서 도출 ▶ (접수)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https://kdata.or.kr/pms) ▶ (공모기간) 2026.2.27.~3.31. ※ 3.6부터 사업관리시스템 통해 신청접수 가능
2. 선정·협약·선금 지급 '26.3~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성심사) 데이터바우처를 신청한 수요기업의 필수 제출서류 및 기본 요건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 ▶ (유사도확인) 사업수행계획서 표절 검사 실시 ▶ (선정평가) 수요기업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발표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서면 및 발표 평가 ▶ (결과발표·협약) 수요기업·공급기업·전담기관과 다자간 전자 협약 체결 ▶ (선금지급) 정부지원금 선금 지급
3. 사업수행 '26.6~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 협약기간 6개월간 데이터 상품·활용서비스의 제공(공급기업) 및 데이터의 비즈니스 적용 등 사업 수행(수요기업) ▶ (교육이수) 사업수행·윤리교육, 청렴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이수
4. 기업점검 '26.8~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기업 점검) 데이터 이관 등 감리(개인정보 점검 포함) 및 품질점검 ▶ (수요기업 점검) 사업 이행점검 및 민간부담금 점검
5. 결과평가 '26.1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평가) 수요기업의 사업 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 수요기업 발굴 ▶ (잔금지급) 정부지원금 잔금 지급
6. 성과확산 '26.12월(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확산) 데이터 활용 기반 우수 수요기업 선정 및 성과 창출 ▶ (사례공유) 데이터바우처 우수 공급·수요기업 사례 공유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 지원 내용

- 공개·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 선별을 위해 공개·활용 조건부 지원과 일반 지원을 구분(공개·활용(사회현안해결 과제 포함), 일반)하여 데이터 기획·설계에서 상품 구매, 수집·생성, 가공, 분석 등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 단계 지원
 - (공개·활용부문) 데이터바우처의 일정 비중(건수)을 공개·활용 조건부로 지원하며, 공익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회현안해결 과제를 포함
 - ※ 공개·활용은 정부 지원으로 수집·생성·구축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되, 원천데이터가 수요기업 소유로 공개 의사가 없거나 개인정보 등으로 공개가 어려운 경우, 일반으로 지원(단, 수요기업이 동의할 경우 공개·활용 부문으로 지원 가능하나, 개인정보 이슈가 있는 데이터는 공개·활용 부문으로 지원 불가)
 - (일반부문) 데이터 공개·활용이 어려운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 부문으로 지원·운영('25년과 동일)

▣ (참고) 데이터바우처 지원 내용

활용단계	업무유형	지원 내용
데이터 기획· 설계	기획/설계	· 수요기업의 비즈니스 이해, 데이터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추진 방향, 추진 일정, 수행 계획 등 데이터 활용 추진 전반의 계획 수립
	데이터 식별 (큐레이션)	· 수요기업의 서비스 분석 및 활용 목적에 필요한 데이터 식별을 위해 자체 보유 중인 데이터 및 추가 수집(큐레이션 포함)이 필요한 데이터를 식별
상품구매	상품 구매	· 등록된 공급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상품(데이터셋) 제공
데이터 수집· 생성	생성·수집	· 수요기업의 다양한 데이터 활용 목적에 필요한 데이터 생성 또는 수집
	자동화	· 데이터 최신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생성·전환 등 자동화 프로세스(ETL) 구축
데이터 가공	전처리	· 서비스 개발 또는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에 따라 이종, 다종 데이터 테이블 또는 컬럼의 연계 활용을 위한 이산, 집합 등 · 자료 또는 정보의 기계 판독가능(machine readable) 형태로 변환
	품질	· 분야별·업종별 데이터 테이블 및 컬럼 표준화, 품질개선(클렌징) · 데이터 활용성 향상을 위한 빈 컬럼 내 데이터 추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 등 · 값 필터, 정합성 검사 및 데이터 값의 보정

활용 단계	업무 유형	지원 내용
	코딩	· 오프라인 데이터의 DB화, 디지털화를 위한 코딩, 통계분석 정보 생산을 위한 코딩
	정보추출 또는 조합	· 이미지·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태깅, 스크립팅 · 집단화된 콘텐츠의 DB화를 위한 메타데이터 구축
	가명처리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가 없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태깅, 라벨링 등	·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데이터에 태깅, 라벨링, 언라벨링 · 초거대·생성형·온디바이스 AI 등 학습·성능개선·평가 데이터 가공 · 파인튜닝, 기업보유 데이터 벡터DB 구축(RAG) 등
데이터 분석	분석·시각화	· 기술적, 통계적 분석 기법을 통해 데이터 분석 결과 도출 · 데이터 분석 결과를 지도, 그래프, 차트, 분석 대시보드 등으로 변환하여 시각화 처리
	기타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데이터 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 데이터 제공을 위한 제반 업무만 인정되며 직접적인 AI 모델서비스 개발 및 AI 솔루션 제공은 불인정

2. 지원 범위 및 대상

- (지원범위) '26년 총 120건 지원, 기업당 1개 과제에 한하며, 정부 지원금 일반부문 최대 4,500만원, 공개·활용부문 7,500만원 한도 내 지원

- 1) 데이터 활용 전 단계(데이터 기획·설계, 상품 구매, 수집·생성, 가공, 분석 등) 자유롭게 지원 가능하나, 데이터 상품과 활용서비스(혼합) 또는 활용서비스 필수 선택
- 2) 데이터 상품만 구매하는 것은 불가
- 3) 그 외 경우(상품구매+활용서비스, 상품구매+활용서비스+기타활용서비스*) 4,500만원(일반) 또는 7,500만원(공개·활용)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단, 상품 구매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 1개 상품만 선택 가능)
* 기타 활용 서비스 : 데이터 기획·설계, 데이터 수집·생성, 데이터 분석·시각화
- 4) 공개·활용부문 지원 시 공유 데이터 산출물 확보를 위해 데이터 상품(공급기업)은 수요에 맞게 필수로 가공하여 중복 공급 금지(상품 제공 공급기업과 사전 협의 必)

- (지원대상) 중소기업(초기 중견기업 포함),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및 사회현안 해결 과제에 한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 및 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 등 지원 가능

■ 데이터바우처 수요기업 범위

구분	내용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3항에 해당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을 적용 <p>※ 초기 중견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및 동법 시행령 특례 요건을 준용하여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기업확인서 발행 및 확인서 상 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인이 가능한 기업 ※ 특례요건은 매출액 부분만 인정(기간에 대한 특례요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라, 요건을 모두 갖춘 자 <p>※ 영세 소상공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과세 적용 영세사업자로 '25년 매출 기준 1억4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예비(재)창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중앙행정기관·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한 대상이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리오(https://www.alio.go.kr) / * 클린아이(https://www.cleaneye.go.kr/) ▶ 민간 기업의 부설 연구소도 해당되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https://www.rmd.or.kr/user/main.do)
대학연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대학에 소속된 연구센터 또는 연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대학에 소속된 연구센터 및 연구팀의 구성은 단일 소속이어야 함 ※ 대학연구팀으로 지원할 경우 사업(연구) 수행인력 구성 시, 1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음(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 필수)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p>※ 중소기업확인서의 기업규모가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도 청년기업*에 해당하는 수요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감면, 선정평가 시 가점 혜택 적용</p> <p>* 청년기업 :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1인 이상)가 사업공고일(26.2.27.)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6.2.27.~2007.2.27.)</p>	

3. 지원 시 유의사항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관리시스템 기반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선정된 수요기업 대상 공급기업 및 전담기관과 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
- (다년지원) ①전년도('25년) 사업 결과평가 상위 20%, ②전년도 상품구매 참여기업, ③청년기업은 다년 신청이 가능하나, 다양한 수혜처 확보를 위해 총 지원 횟수는 최대 3회까지로 제한하며, 그 이상은 신청 불가
 - ※ 과년도 지원받은 기업이 재지원 시 이전 참여 과제에 대한 개요·설명(요약)과 이전 과제와의 차별점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사업수행계획서에 작성)
- (사업 결과평가) 전년도('25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결과평가 상위 20% 이내 수요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25년 데이터바우처 수요기업 결과평가 상위 20% 수요기업 명단(별도 첨부) 확인 필요
- (전년도 상품구매 지원) 전년도('25년) 데이터 상품 구매만 참여했던 수요기업은 결과평가와 관계 없이 지원 신청 가능하나, 데이터 상품 구매만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가공 등 활용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함
 - ※ '19년~'25년 가공 부문 참여 수요기업은 다년 지원 신청 불가
- (청년 지원) 과년도('19년~'25년) 既 참여한 청년기업은 창업 및 지속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신청 가능
 - ※ '19~'25년 참여 수요기업이라도 사업 공고일 기준 청년기업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년 지원 신청 불가
- (가점 사항) ①청년기업(예비창업자 포함), ②데이터 가치평가 및 데이터 품질인증을 받은 데이터(상품)를 데이터바우처 사업에서 가공 및 분석·활용을 희망하는 수요기업, ③2025년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선정기업(해당시 가점 증빙서류 업로드)
- (감점 사항) 수요기업이 과년도('19년~'25년) 전담기관으로 부터 '경고'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 선정평가 시 감점 5점

< 가점 항목 >

구분	가점	내 용
청년기업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기업 신청 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1인 이상)가 청년(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기업을 설립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중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가치평가·품질인증 데이터 활용	1점	<p>[데이터산업법 제14조, 제20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을 통해 가치평가를 받은 데이터를 보유한 수요기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가공(활용)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하여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주)나이스디앤비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품질인증기관*을 통해 '품질인증서'를 획득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본 사업에서 해당 데이터를 가공(활용)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진행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에 한하여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주)와이즈스톤, (주)씨에이에스
혁신프리미어 1000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년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선정기업에 대해 가점 부여

- (할당지원) 전 지역 데이터 활용 확산,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체 지원 건수 중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경우 전체 건수의 지역 기업 40%(48건), 영세 소상공인 5%(6건) 할당하여 중점 지원

< 부문별 할당 지원 건수 >

지원부문	지원건수	지역기업 할당(40%) (비수도권)	영세 소상공인(5%)
일반	60건	24건	3건
공개·활용	60건	24건	3건

- ※ (비수도권 정의) 수도권을 제외한 그 외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하며,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경기·인천)을 말함(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 ※ 사업자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 예비창업자는 주민등록표(초본)상 현주소를 기준으로 함
- ※ 지역기업, 영세 소상공인은 중복하여 할당될 수 있으며, 부문별 할당 미달시 타 부문에서 추가 할당할 수 있음

- (지원 제외)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리규정」제34조(제재조치)에 따라 제재를 받은 수요기업,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중복 참여, 과거 참여 이력이 있는 두 기업의 교차 지원, 다른 지원사업과 동일·유사한 과제 및 데이터산출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불가
 - (동일대표 多사업자) 동일한 대표자로 다수 사업체 보유 시 1개의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하며 선정 제외
 - (공급기업) '26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또는 대표자는 수요기업으로 신청 불가
 - (제재 기업) 과년도('19~'25년) 참여 기업 중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은 '26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신청 불가
 - (교차 지원) 과거 본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두 기업(동일 대표자 등 특수관계자 포함)이 수요·공급 역할을 바꾸어 교차로 지원받는 경우 신청 불가 및 선정 제외
 - (동일·유사 과제) 과제 중복심의를 통해 타 정부 지원사업*과 동일·유사**한 과제 확인 시 선정에서 제외
 - * 데이터·AI관련 정부지원사업
 - ** 과제명, 과업 내용, 예상 데이터 산출물, 참여 인력 등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정당 기업) 조달청 나라장터 부정당제재 정보공개에서 조회되는 부정당사업체(국가계약법 제27조),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휴업 및 세금체납·임금체불 기업은 지원이 불가하며, 해당하는 문제를 공모기간 내 해소* 후 지원 가능
 - * 부정당업체, 채무불이행, 임금체불 등의 문제에 대해서 전담기관은 관여하지 않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은 관련 기관으로 직접 문의·해소 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지원 가능
- (신청접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은 공모 안내서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정보 입력 및 사업수행계획서, 발표자료 등 선정평가에 필요한 서류제출
 - ※ 신청정보 입력 시 데이터바우처 포털(<https://kdata.or.kr/datavoucher>)에 등록된 데이터 상품 및 활용서비스를 확인하고, 지원 과제에 필요한 내용으로 작성(포털 미등록 상품 및 서비스 지원 불가)

- (사업수행계획서) 전담기관이 제공하는 제출서류 양식에 따라 과제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신청·접수
- (과제협약) 수요기업은 희망 공급기업과 과제를 협의하여 데이터 상품 또는 활용서비스에 대한 과제협약서¹⁾ 및 견적서²⁾ 작성 및 확인하여 제출
 - 1) (과제협약서) 데이터바우처를 통해 지원하는 데이터 상품 또는 활용서비스에 대해 수요기업의 요구사항과 공급기업이 제공가능한 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수요·공급기업 간 상호 합의한 협약서
 - 2) (견적서) 수요-공급기업 간 협의한 과제협약서를 기반으로 데이터 상품 및 활용서비스에 대한 견적 금액을 산출하여 작성
- ※ 공급기업과의 과제협약 등 사업 운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사업관리시스템 內 '매칭게시판' 운영
- ※ 협약 이후 수요기업 사업지원을 위해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 거래사*'를 활용하여 큐레이션, 멘토링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견적서 내 비용편성 가능
 - * 1일 상한액 40만원으로 총 합계는 공급금액의 5% 초과 불가
- (과제협약서·견적서 등록) 수요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급기업에게 요청하는 서류이며, 요청을 받은 공급기업은 수요기업과 협의를 통해 과제협약서와 견적서를 발행해야 함
 - ※ 공급기업은 견적서 발행 시 금액은 천원 단위 절사하여 입력
 - ※ 사업관리시스템 신청접수 5단계 업로드된 과제협약서와 견적서를 수요기업이 최종 확인 후 승인해야만 최종 제출 완료되며 **마승인 시 마제출 서류는 사업포기와 동일하게 간주함**
- (발표자료) 전담기관이 제공하는 PPT 양식을 활용하여 발표시간 10분 이내 분량으로 작성 후 신청접수 시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 선정평가 시 발표질의 응답은 온라인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진행하며, 발표자는 원칙적으로 수요기업의 실무책임자 또는 대표자로 함
 - ※ **발표평가 참여 시 유의사항:**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선정 평가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수요기업은 **발표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발표 불가(미참여, 소통불가 등)상태 시 미선정 처리함**
- (공개활용 협약서) 데이터바우처 지원을 통한 산출물 및 데이터를 향후 전담기관이 공개·활용하는 것을 협약하는 협약서(수요-공급기업

공동 인감 날인) 파일 업로드

※ 공개·활용부문 지원 시 필수 제출 서류 해당

- **(매칭제한)**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데이터 활용에 균형감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특정 공급기업에 매칭이 쏠리지 않도록 1개 공급기업당 수요기업 매칭 상한선 제한

- 부문(일반, 공개·활용)별 규모의 10%(6건)로 제한, 총 12건까지 가능

- ※ 타 공급기업 상품을 계약 등을 통해 위탁 판매하는 경우 원 소유 및 위탁 판매 기업 상품을 합산하여 매칭 제한에 포함 적용

- 매칭 제한 적용 기준은 선정평가 결과 우수한 기업(고득점) 순으로 하며, 동점일 경우 평가 배점* 순

- * 공개·활용 부문은 활용성 및 시장성 → 산출물 공유 적합성 → 과제 목표 타당성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지속성 및 성장성 순

- **(다자협약)** 데이터bauer 지원사업에 선정된 수요기업은 매칭된 공급기업과 전담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다자 협약(전자협약)을 체결하고, 과제협약서와 견적서·협약서를 기반으로 사업수행

- ※ 협약 외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데이터 거래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 데이터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고(<https://kdata.or.kr/kr/contents/guideline01/view.do>)

- ※ 데이터 상품 구매 협약 시 '법률검토 확인서' 제출 필요

4. 민간부담금 및 사업비 구성

- **(민간부담금 구성)** 데이터bauer 지원사업으로 참여하는 수요기업은 기업 규모에 따라 민간부담금(현금이나 현물) 구성 필수

- ※ 민간부담금 미이행 시 제재 조치(확약서 징구 예정)

- ▣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현금은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에게 직접 지급하며, 현물은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인정

- ▣ **(민간부담금 현물 인정 기준)** 참여인력 중 동일인이 복수 과제 참여 시 현물 인정 범위는 과제 총합 100%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불인정

- **(민간부담금 면제 대상)** 예비창업자와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공·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

- ※ 사회현안해결 과제로 지원하는 일반기업 등은 민간부담금 면제 해당 없음

- (사업비 구성)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 신청 시 자사 기업 규모별 신청 요건에 맞게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를 구성하여 신청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민간부담금 구성표 >

구분	내용																	
초기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부담으로 매칭하고, 전액 현금 부담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총사업비</td> <td>=</td> <td>정부지원금</td> <td>+</td> <td>민간부담금(현금)</td> </tr> <tr> <td>100%</td> <td></td> <td>75%</td> <td></td> <td>25%</td> </tr> </table>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100%		75%		25%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100%		75%		25%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고,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부담 필수이며, 나머지는 현물 부담 가능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총사업비</td> <td>=</td> <td>정부지원금</td> <td>+</td> <td>민간부담금(현금+현물)</td> </tr> <tr> <td>100%</td> <td></td> <td>75%</td> <td></td> <td>25%</td> </tr> <tr> <td colspan="2"></td> <td colspan="2"></td> <td>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현금 (민간부담금의 10% 이상)</td> <td>현물 (민간부담금 - 현금)</td> </tr> </table> </td> </tr> </table>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100%		75%		2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현금 (민간부담금의 10% 이상)</td> <td>현물 (민간부담금 - 현금)</td> </tr> </table>	현금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물 (민간부담금 - 현금)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100%		75%		2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현금 (민간부담금의 10% 이상)</td> <td>현물 (민간부담금 - 현금)</td> </tr> </table>	현금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물 (민간부담금 - 현금)												
현금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물 (민간부담금 - 현금)																	
소상공인	▶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부담으로 매칭하고, 전액 현물 부담 가능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총사업비</td> <td>=</td> <td>정부지원금</td> <td>+</td> <td>민간부담금(현물)</td> </tr> <tr> <td>100%</td> <td></td> <td>75%</td> <td></td> <td>25%</td> </tr> </table>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물)	100%		75%		25%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물)														
100%		75%		25%														
영세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민간부담으로 매칭하고, 전액 현물 부담 가능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총사업비</td> <td>=</td> <td>정부지원금</td> <td>+</td> <td>민간부담금(현물)</td> </tr> <tr> <td>100%</td> <td></td> <td>90%</td> <td></td> <td>10%</td> </tr> </table>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물)	100%		90%		10%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물)														
100%		90%		10%														
청년기업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민간부담으로 매칭하고, 전액 현물 부담 가능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총사업비</td> <td>=</td> <td>정부지원금</td> <td>+</td> <td>민간부담금(현물)</td> </tr> <tr> <td>100%</td> <td></td> <td>90%</td> <td></td> <td>10%</td> </tr> </table>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물)	100%		90%		10%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물)														
100%		90%		10%														
예비창업자	▶ 민간부담금 면제																	
중앙부처·지자체, 공공·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	▶ 민간부담금 면제(사회현안해결 과제)																	

- ※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 신청 시 사업비 구성 오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민간부담금계산기(MS오피스 엑셀 파일)'를 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수행계획서 작성 및 신청 요망
- ※ 협약 후 수요기업 민간부담금 점검 시 현물(인건비) 증빙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인정(세부 증빙서류는 사업관리시스템 공지사항 게시글 참고)
- ※ 현물 부담이 가능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 ※ 데이터바우처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매칭 금액은 천원 단위 절사하여 입력

5. 제출 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2026년 2월 27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함**
- **시스템 자동 조회 서류** : 사업관리시스템 자동 검증을 통해 조회되는 서류(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서류	중소기업 소상공인	초기 중견기업	예비 창업자	중앙행정 기관 자체	공공 기관 연구 기관	대학 연구팀	병원	발급정보
납세증명서 (국세완납 확인)	●	●	●	-	●	●	●	홈택스 (hometax.go.kr)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완납 확인)	●	●	●	-	●	●	●	정부24 (gov.kr)
법인등기부등본	●	●	-	-	-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업자등록증명	●	●	-	-	●	-	●	홈택스 (hometax.go.kr)
중소기업확인서*	●	-	-	-	-	-	-	중기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	-	●	-	-	-	-	-	중견기업 정보미당 (mme.or.kr)
사실증명	-	-	●	-	-	-	-	홈택스 (hometax.go.kr)
주민등록표(초본) 사본	-	-	●	-	-	●	-	정부24 (gov.kr)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	-	-
알리오 공시자료 클린아이 공시자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	-	-	●	-	-	알리오(www.alio.go.kr) 클린아이(www.care.go.kr) RND(www.rnd.or.kr)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	-	-	-	-	●	-	대학 별도 발행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사본	-	-	-	-	-	-	●	지방자치단체 발행본
사업수행계획서	●	●	●	●	●	●	●	공모안내서 별첨
발표자료	●	●	●	●	●	●	●	공모안내서 별첨
공개·활용 약약서	●	●	●	●	●	●	●	공모안내서 별첨 (공개·활용 부문 지원시에만 해당)

*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2025.4.1.~2026.3.31.)으로 발급된 서류가 있으면 자동 조회

※ [중요] 제출서류별 유의사항

- 정상 제출되지 않은 서류는 적격성심사 '부적격' 처리되어 평가대상에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별 유의사항 숙지 후 제출 요망(별도 보완 절차 없으며, 수요기업 실수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수요기업에게 있음)

제출서류	유의사항
시스템 자동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란색 셀에 해당하는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서류는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 조회됨 * 예비창업자,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대학연구팀은 자동 검증 미대상으로 상기 표 (※ 5. 제출서류)의 해당 서류 별도 제출 필수 *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시스템 자동 조회 후 미대상 기업은 접수 불가 * 사업관리시스템 자동 조회 결과 초기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해 접수 가능 ▶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자동 검증을 통해 기업규모 조회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자동 검증이 불가하므로 신청 접수 전 중기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필수 ▶ 자동 검증 시 컴퓨터 운영체제는 반드시 윈도우 환경 사용(MS Windows 10 이상) ▶ 영세 소상공인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동 조회
사실증명 (예비창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제출 ▶ 과거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 제출 ▶ 공고일 이후 사업자등록한 경우: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 제출 * 연도 설정 시 2016년~2026년으로 최대 설정하여 발급(홈택스, 사실증명신청)
주민등록표(초본)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초본)만 해당(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불가) * 주민번호 앞자리 및 현주소 공개 필수,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필수
알리오 공시자료 클린아이 공시자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또는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 에서 해당 기관명을 조회하여 공시된 화면 캡처본 제출 ▶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에서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서 발급 대상 * 해당되는 부분 택1 하여 제출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연구팀 전체 참여 인력 개별 제출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또는 참여인력을 인정하는 대학의 공식 문서(총장직인 必) ▶ 해당 서류 외 타 서류 불인정(수료증명서 등 제출불가) *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필수
사업수행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안내서 별첨 사업수행계획서 양식 준용하여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수요기업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공급기업 대리 작성 불가(유사도 확인 절차 참조)
발표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안내서 별첨 발표자료 양식 준용하여 작성 후 업로드 ▶ 발표자는 원칙적으로 수요기업 실무책임자 또는 대표자로 함 ▶ 실시간 발표 시 발표자의 모습(상반신 이상)과 성함, 직급을 말하고 신분증(본인 사진 식별이 가능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사진과 정보를 화면으로 확인함 ▶ 발표자료(PPT)파일을 작성하여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 영상 발표 시작 전 신분증 확인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생년월일)확인 하며, 나머지 개인정보관련 내용은 반드시 비식별 처리 필수
공개·활용 약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활용부서 신청접수 시 공모안내서 별첨 발표자료 양식 준용하여 공급 기업과 수요기업이 확인 및 인감 날인하여 사업관리시스템 마지막 단계 에서 업로드하여 최종 제출 * 반드시 인감 날인해야하며, 누락 시 인정 불가

6. 지원사업 점검 및 결과 보고

- (기업 점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수요·공급기업 대상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점검* 실시

* 부정한 방법을 통해 바우처를 신청한 기업의 참여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 관리 규정 제27조, 제29조, 제32조에 근거하여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에 대한 협약 의무 이행점검 실시

- 점검 불응 수요·공급기업의 경우 협약 해약 및 제재 조치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점검 항목 >

구분	내용
수요기업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이행점검 및 민간부담금 점검 ※ 지원받은 구매가공 데이터의 사업 적용 준비, 방법, 계획 및 적용 내용, 인건비 등 점검을 통해 확인
공급기업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 및 데이터 산출물, 품질점검 등 감리 ※ 클라우드소싱 방식의 활용서비스 제공기업은 감리 시 클라우드소싱 인력 활용 현황, 비용 지출 내역(계획) 등 확인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활용부문 해당 기업 대상 공개 조건 이행을 위한 준비 여부 확인

※ 이행점검 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제의 경우, 사업계획서 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시 관련 규정의 이행·점검·조치방안과 법률 검토내용 등)에 대한 사항과 개인정보 현황점검

- (결과 보고)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수요기업은 지원받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한 결과를 제시해야 함

※ 본 공모의 사업 수행기간은 6개월이며, 수요기업 사업결과평가는 사업기간 종료 시점 실시 예정(사업결과평가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예비창업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 아이템과 관련한 내용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협약 종료일까지(~26.11.30) 사업자 등록 완료 및 제출 필수

※ 사업자 등록을 미이행한 예비창업자의 경우 제재 조치

III 선정 방안

1. 평가체계 및 절차

- (평가체계) 수요기업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적격성 심사 후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 요건에 부합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 선정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평가 절차 >



※ 유사도 확인은 문서 표절검사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실시

- ① (적격성심사) 수요기업이 제출한 서류와 시스템 자동 조회 서류를 기반으로 데이터바우처를 신청한 수요기업의 기본 요건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

적격성심사 항목		확인서류
기업유형	기업유형별 지원대상 여부	중견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제출서류 및 시스템 자동 조회 서류
채무·신용	세금체납 및 채무불이행, 임금 체불 여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제출서류 및 시스템 자동 조회 서류
참여제한	휴폐업 및 부정당제재 여부	

※ 확인 서류는 기업유형별 제출서류(※ p.14.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제출

※ 적격성심사에서 '부적격' 처리된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불가

- ② (유사도 확인) 수요기업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의 표절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선정평가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미선정될 수 있음

- ③ (선정평가) 수요기업이 제출한 사업 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 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하여 온라인 발표평가 진행
- ④ (결과발표) 평가 결과는 신청·접수기업 전체 대상 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협약과 관련한 제출서류 준비 등을 위해 선정 기업에 한하여 별도 공지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위원회 구성) 각 협력기관 전문분야 전문위원과 데이터·경영·회계·법률전문가 등 총 5인 내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전문분야의 전문위원은 수요기업 신청 사업의 산업분야별 지정 협력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기준) 평가는 과제 목표의 타당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활용성 및 시장성, 성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되, 발표평가 시에는 평가 항목 외에도 수요기업 사업 이해도 및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
- (평가·선정 방법) 수요기업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발표 기반으로 평가하여 점수(가점포함) 60점 이상 득점 기업에 대해 바우처 지원 가능 기업으로 분류하고, 고득점 기업에 우선하여 지원
 - 1차 서면평가(전수) 및 2차 발표평가(2배수, 240건) 운영 예정
 - 일반 및 공개·활용부문 선정 과제 수가 지원 건수에 미달하는 경우 타 부문에서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 가능
 - 사회문제 10대 분야는 평가 시 지원 합목적성, 추진 긴급성 등을 반영(붙임1 참고)

<(참고) 선정평가 항목 및 기준(안)>

세부항목	평가기준	일반 부문	공개활용 부문
		배점	배점
과제 목표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바우처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과의 부합성 ▶ 타 사업 대비 수요기업 사업의 독창성 ▶ 새로운(新) 데이터 창출을 위한 수요기업 사업의 혁신성 ▶ 수요기업 사업을 위해 신청한 데이터 또는 서비스의 역할, 적절성 및 중요성 ①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 내 미개방 데이터 활용, ② 피지컬시 적용 데이터 구축·활용, ③ 해외진출(수출) 비즈니스 활용 수요기업 우대 	30	20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기업 사업의 추진계획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참여 인력의 기술력, 전문적 역량 및 효율적인 활용 계획 ▶ 데이터·서비스 거래조건의 부합성 및 비용편성의 적정성 ▶ 공급기업 역량 및 매칭의 적정성(과제협의를) 	20	20
활용성 및 시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한 기업성장 및 시장성 ▶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체감 기대효과 ▶ 매출증가, 생산성 향상, 수입대체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 ▶ 시장진출 계획 또는 가능성 등 	40	30
지속성 및 성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운영 및 고도화 방안 ▶ 꾸준한 노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scale-up) 	10	10
산출물 공유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물 공개활용 계획, 공개·활용 적합성 및 효과성 등 ▶ 데이터의 활용 가치(안정성, 일관성, 사용성, 범용성, 유효성 등) 등 	-	20
가감점 항목 (서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기업의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가점 1점 부여 - 수요기업 중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1인 이상)가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경우 1점 가점 부여 ▶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을 통해 가치평가를 받은 데이터를 보유한 수요기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가공(활용)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하여 선정평가 시 1점 가점 부여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주)나이스디앤비 ▶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중 품질인증기관*을 통해 '품질인증서'를 획득한 데이터이며, 본 사업에서 해당 데이터를 가공(활용)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진행하려는 수요기업에 한하여 1점 가점 부여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주)와이즈스톤, (주)씨에이에스 ▶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기업(확인서 증빙 업로드)에 대해 가점(1점) 부여 ▶ 과년도('19~'25년) 참여 기업 중 '경고'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에 한하여 5점 감점 부여 		

※ 상기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담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신청접수 안내

- (공모기간) 2026년 2월 27일(금) ~ 3월 31일(금) 18:00 까지
 - 신청 접수는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3.6(금)부터 가능
- 접수방법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데이터바우처 신청기업은 데이터바우처 포털에 등록된 데이터 상품 및 활용서비스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데이터바우처 공모 안내에 따라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최종 제출 완료 이후, 접수 마감 기한 전까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파일 등 수정하여 재제출 가능하나 마감 기한 이후 수정 불가 및 임시저장 상태의 접수는 불인정함

2. 문의처 및 관련 홈페이지

- (문의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고객센터(대표번호 1833-2246) 또는 사업관리시스템 1:1문의게시판
- (관련 홈페이지) 데이터바우처 포털 및 사업관리시스템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유튜브 채널([바로가기](#))
 - 사업설명회, 참여기업 탐방,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영상 등 참고 가능

1. 신청조건 및 일반사항

- '26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데이터바우처 포털 및 사업관리시스템 등 지정된 사이트에서 공모 안내서 공고
 - 공모 절차와 조건, 점검 방법 및 지원내용을 과년도('19년~'25년) 데이터바우처 공모와 혼동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26년 공모안내서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접수 요망
- 공고 내용 숙지가 미숙하여 발생 된 제출 자료 누락, 기재 내용 오류 등 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있으며, 제출·작성된 내용은 접수 마감 기한까지 수정·삭제 가능하나, 접수 마감 기한 이후 일체 수정·삭제·반환 불가
- 접수 마감 전 접수자의 PC환경에 따라 온라인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병목현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으므로 조기 제출 요망
 - 특히, 신청·접수 시 제출한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 기재 오류 (누락)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망하며, 제출 (업로드)한 증빙(첨부)파일에 이상이 있는 경우(파일 오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서류 등) 그 과실은 수요기업에 있으며, 접수 마감 기한 이후 제출 서류에 대한 추가 보완 절차는 절대 없음
 - 사업에 대한 공지와 단계별 결과발표 등 안내는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한 내 적의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있음
- 수요기업이 직접 제시하는 사업수행계획서 상 사업비 구성(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있음

- 수요기업이 작성한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해당 허위 내용을 고의로 기재하였을 경우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정부 공공데이터에 등록·공개된 AI 학습용 데이터셋 또는 개방 데이터를 근원 데이터로 활용하여 가공 활용할 수 있음
 - ※ 단, 점검 시 등록·공개된 데이터와 동일하거나, 재가공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비 반납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공개된 데이터셋 활용 시 각 해당 기관의 정책을 따르며 협의 완료에 대한 증빙 필요
- '26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공급기업이 협약시작일 전 제재(참여제한, 공급기업 해약 등) 조치를 받을 시 통지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공급기업(위탁한 상품까지 포함)은 사업 수행 불가
 - ※ 제재 조치를 받은 공급기업과 협의·매칭된 수요기업 과제는 불인정하며, 해당 수요기업은 포털에 등록된 타 공급기업과 재협의·매칭 추진
- 본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전담기관에 작성·제출한 사업 수행계획서, 수행 결과보고서 등 일체의 자료 및 데이터, 데이터 활용사례는 정부 정책(데이터 문제해결은행 운영 등)에 따라 자료의 통합관리 및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음
- 공개·활용 부문에서 지원한 데이터 산출물은 제3자를 대상으로 반출 또는 이전되지 아니하며*, 전담기관이 지정한 공간(예: 데이터 안심구역, 데이터문제해결은행 등)을 통해 활용 예정
 - ※ 단 참여기업이 산출물의 완전한/전면적 공개(개방) 동의 시 반출이나 이전될 수 있음
- 위 지정 공간에서 이용자는 공개·활용 데이터를 분석, AI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원본 데이터를 제외한 분석, 학습의 결과(값)만 반출 예정
- 본 공모안내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리규정」,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운영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등을 적용

2. 평가 제외

- 수요기업의 선정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수요기업이 제출한 서류가 전담기관에서 요구한 서류와 다르거나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사전 매칭 및 평가 과정에서 전담기관의 판단에 따라 선정 또는 협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 교부된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함
 -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함

3. 사업관리 및 점검

-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점검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리규정 제28조 및 제31조'에 근거하여 진행하며 세부적인 추가 점검내용은 본 공모안내서에 고지한대로 실시함
 - ※ 제28조(수요기업 관리) 이행점검, 민간부담금 점검, 사업수행·윤리 교육 이수증 제출, 개인정보 처리 관련 항목 점검, 이 외 세부 일정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공지
 - ※ 제31조(공급기업 관리) 이관데이터 감리 및 품질점검, 사업수행·윤리 교육 이수증 제출 등 관련 증빙 제출(참여인력, 비용지급 증빙 등), 개인정보 처리 관련 항목 점검
- 사업에 대한 점검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감리기관과 운영지원 기관을 통해 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점검 방식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점검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진행함
- 수요·공급기업은 전담기관이 배포한 양식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전담기관이 점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에 이관할 최종결과물(데이터 상품 및 가공 등 산출물)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전담기관이 사업관리 및 점검을 위해 최종 결과물을 검토 및 열람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허락해야 함

※ 최종결과물을 열람하는데 제3자의 이용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은 사전에 이를 확보해야 함

- 공급기업은 수요기업과 과제 협의 시 데이터 하자보수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설정하고, 수요기업은 하자보수의 무상·유상 조건을 협의하여 과제협약서에 명시해야 함

- 하자보수 외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의 상호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다만,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민간 자율계약을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전담기관은 조정 및 개입하지 않음

- 수요기업과 협약한 빅데이터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참여 공급기업의 데이터 상품은 국가 데이터 인프라 표준 카탈로그* 생성·제출을 의무화하며, 그 외 공급기업은 카탈로그 생성·등록을 권고함(협약 후 별도 안내)

* 데이터 소재·구성·유통·활용·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검색 가능한 DCAT 2.1 기반 표준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공급기업과 수요기업간의 데이터 공급·활용 분쟁 해결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산업법' 제34조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데이터 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4. 부정행위 제재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서 협약 위반 등 제재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바우처 관리 규정」 등에 따라 제재조치 할 수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음

E-클린신고센터 운영 안내

-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수요·공급기업의 부정 행위를 목격 시, E-클린신고센터 홈페이지(<https://www.kbei.org/www/helpline/step1.php?cid=kdata>) 또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감사실(02-3708-5451)로 문의 바랍니다.

5.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 처리 과제에 한함)

-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가명·익명처리 등 비식별 조치를 포함한다)¹⁾하거나, 그 사업 목적물(산출물)에 대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해설서,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²⁾를 준수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1)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
 - 2)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준수하여야 할 법적 의무사항,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한 협약상 준수사항 등을 포함
- 본 지원사업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공급기업을 통해 위탁하여 처리 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서식) 사업수행계획서 내 개인정보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 시 입력·제출
 - *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활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유형(민감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등), 위탁 처리 또는 제3자 제공(예정된 경우를 포함)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비식별 조치(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 파일 현황 등을 사업수행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작성

** 해당 과제는 신청 접수 시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필수 입력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필요한 경우 제3자 제공) 등의 적법한 동의 확보와 안전한 관리 방안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비식별 조치(가명 또는 익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 적절한 가명화·익명화 기술 등 적법한 비식별 조치 이행 방안과 법률 검토 내용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협약기업(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은 각각 개인정보보호책임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과제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 등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야 함
-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은 개인정보 처리에 앞서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유형 등에 따라 관련 법률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기관에서 배포하는 가이드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 관련 주요 가이드(예시) 참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구분	소관부처
▸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교육부
▸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금융위원회
▸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	행정안전부
▸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방송통신위원회

- 전담기관은 수요기업·공급기업에 대한 점검과정(이행점검, 결과평가 등)을 통해 협약과제의 개인정보 관련 법·규정의 준수 여부와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 등이 발견되는 경우 시정 등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구받은 수요·공급기업은 이를 보완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점검 및 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 협약 과제를 수행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한 방법, 사업 목적물 내 개인정보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활용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안전하게 파기하였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 데이터 점검결과를 사업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였거나,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약,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손해 배상 청구 또는 고발 조치 등이 있을 수 있음

사회문제 10대 분야 43개 영역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3~'27)]

< 사회문제 10대 분야 43개 영역 >

10대 분야	43개 사회문제 영역		
건강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독
	퇴행성 뇌/신경질환		정신질환·지적장애
환경	생활 폐기물	실내 공기오염	수질 오염
	환경 호르몬	산업폐기물	미세먼지
문화여가	문화소외	문화·여가공간 미비	
생활안전	성범죄	먹거리 안전	사이버 범죄
	가정 안전사고	사생활 침해	보이스 피싱
재난재해	기상재해	화학 사고	감염병
	방사능 오염	지진	소방안전
에너지	전력수급	에너지 빈곤	
주거교통	불량/노후 주택	교통혼잡	교통안전
가족	고령화	가정폭력	저출산(저출생)
			1인가구 소외
교육	교육격차		학교폭력
사회통합	의료격차	디지털 격차	취약계층 생활불편
	일자리 부족		사회 양극화 및 갈등
3차 계획('23년) 신규			3차 계획('23년) 조정
			2차 계획과 동일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개·활용 약속서(안)'

본 약속서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공개·활용 부문' 지원 과제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참여기업(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이하 같음)은 지원사업을 통한 데이터 산출물의 공개·활용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참고

본 약속은 '공개·활용 부문'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신청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개·활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반 부문'을 통해 지원사업에 공모하실 수 있습니다(단, '사회현안해결' 과제는 모두 '공개·활용 부문'에 해당함을 유의).

1. 본인(기업)은 본 약속서 제출이 자율적 의사에 따른 선택 사항임을 인식하고, 데이터 산출물이 공개·활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이해한 후,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 '공개·활용 부문' 공모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기업)은 아래의 활용 조건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향후 선정 결과에 따른 '협약' 및 협약 종료 시 '데이터 이용허락 계약(가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임을 약속합니다.

활용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데이터AI 사업 등 데이터 활용 확산 목적
활용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산출물(사업계획서, 견적서·과제협의서, 결과보고서 등 일체의 자료) ▪ 데이터 산출물(생성·수집·가공·활용되어 공급될 데이터 등)* * 견적서 또는 과제협의서 등 제출 대비 초과 달성한 부분을 포함
활용범위 및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물은 제3자를 대상으로 반출 또는 이전되지 아니하며*, 전담기관이 지정한 공간(예. 데이터안심구역, 데이터문제해결은행 등)을 통해 활용 * 단, 참여기업이 산출물의 완전한/전면적 공개(개방) 동의 시 반출이나 이전될 수 있음 - 위 지정 공간에서 이용자는 공개·활용 데이터를 분석, AI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원본 데이터를 제외한 분석, 학습의 결과(값)만 반출 가능
활용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기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부터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공간(물리적 공간 또는 플랫폼)에서 산출물 이용을 허락받은 자
활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협약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향후 (5)년 간 이용* * 법령에 따라 관리·보관 기간이 활용기간 이상 규정된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름 - 참여기업(수요·공급기업)의 별도 거부의사(Opt-Out)가 없는 한 (1)년 단위 자동 연장 ※ 참여기업이 산출물의 완전한/전면적 공개(개방)에 동의 시 기간제한 없음

3. 본인(기업)은 산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며, 향후 공개·활용에 장애가 없는 상태로 조치·제공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4. 본인(기업)은 산출물 공개·활용 의사를 번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행정규칙·기타 규정·지침 등에 따라 지원금의 환수(잔금 미지급을 포함)나 제재 등 불이익한 조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참여기업	수요기업	(소속명) _____, (대표자) _____	(인)/(서명)
	공급기업	(소속명) _____, (대표자) _____	(인)/(서명)